

## 가나의 환경관련 정책 및 법령의 주요 내용

정보신청기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I. 총설

가나의 환경관련 법률의 기원은 가나의 식민 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환경관련 법률의 대부분은 질병의 방지와 통제와 관련이 있었으며, 그 이후 관련 법률들은 정부의 주요기관과 공장들이 위치한 대도시에서 시행되어 왔다. 예컨대, 가장 오래된 법률 중 하나는 1897년 1월 29일의 해변장애법률(Beaches Obstruction Ordinance (Cap 240))이다. 가나가 독립한 이후, 몇몇의 법률이 가나의 공업 발전을 위하여 통과된 것이다.

그러나 환경보호는 1972년 스톡홀름 협약 이후에 중요한 논점으로 떠올랐다. 이것이 197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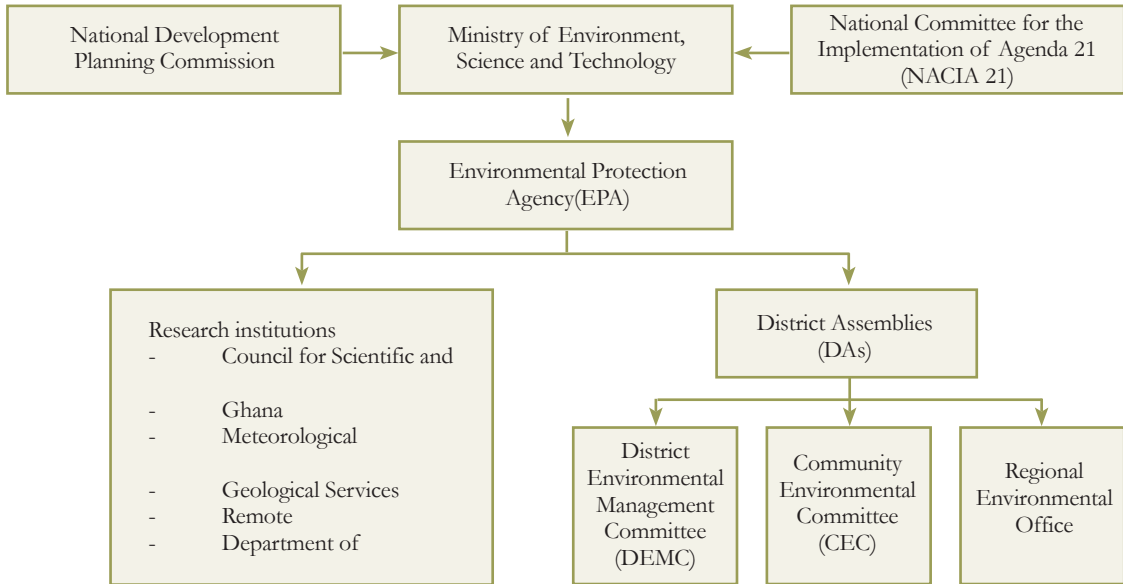
EPC의 설립을 이끌었고, 그 이후 1994년에 환경부(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로 변경되었다.

특히 제4공화국 1992년 헌법 제6장의 41조(K)는 가나의 국민에게 환경 보호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것은 가나의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1994년 환경부법(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ct 1994)을 의회가 통과시키는 것은 타당한 일이었다.

이하에서는 먼저 가나 환경부에 의하여 시행된 환경관련 주요 법령들을 소개하고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 뒤, 가나의 환경위생정책(Environmental Sanitation Policy)을 소개한다.

# 맞춤형 법제정보

〈그림〉 가나의 환경정책결정, 자문 기구



〈표〉 가나의 환경관련 법령

구 분	법령명
대기오염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ct, 1994(Act 490) - Management of Ozone Depleting Substances and Products Regulations, 2005
해양환경	- Fisheries Act, 2002 - Maritime Zone(Delimitation) Act, 1986 - Wetlands Management(RAMSAR Sites) Regulations, 1999
에너지 및 지하자원	- Atomic Energy Commission Act, 2000 - Diamonds Act, 1972 - Energy Commission Act, 1997 - Ghana National Petroleum Act, 1983 - Minerals Commission Act, 1993 - Minerals Export Duty(Abolition) Act, 1987 - Minerals Health Areas Act, 1925 - Small Scale Gold Mining Act, 1989 - Volta River Development Act, 1961 - West African Gas Pipeline Act, 2004

구 분	법 령 명
동·식물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nimals(Artificial Insemination) Act, 1955</li> <li>- Animals(Control and Importation) Act, 1952</li> <li>- Control and Prevention of Bush Fires Act, 1990</li> <li>- Economic Plants Protection Act, 1979</li> <li>- Forest Plantation Development Act, 2000</li> <li>- Timber Resource Management Regulation Act, 1998</li> <li>- Timber Operations Act</li> <li>- Tree and Timber Act, 1974</li> <li>- Timber Resource Management Regulations, 1998</li> <li>- Timber Industry and Ghana Timber Marketing Board Act, 1977</li> <li>- Wild Animals Preservation Act 1961(Act 43)</li> </ul>
주택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ncessions Act, 1939</li> <li>- Concessions Act, 1962</li> <li>- Copyright Act, 2005</li> <li>- Centre For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Act, 1996</li> <li>- Centre For Scientific Research into Plant Medicine Act, 1975</li> <li>- Confiscated Assets(Recovery and Disposal) Committee Act, 1979</li> <li>- Food and Drugs Board · Administration of Lands, Act 1962</li> <li>- Ghana Ports and Harbors Authority Act, 1986</li> <li>- Ghana Maritime Security Act, 2004</li> <li>- Ghana Maritime Authority Act, 2002</li> <li>- Ghana Shipping Act, 2003</li> <li>- Ghana National Fire Service Act, 1997</li> <li>- Ghana Meteorological Agency Act, 2004</li> <li>- Ghana Tourist Control Authority Act, 1973</li> <li>- Ghana Standards Board(Food, Drugs and Other Goods) General Labelling Rules, 1992</li> <li>- Infectious Diseases Act, 1908</li> <li>- Local Government Act,</li> <li>- Local Government Service Act</li> <li>- Seeds(Certification and Standard) Act, 1972</li> <li>- Standards Authority Act, 1973</li> <li>- Telecommunications(Frequency Registration and Control) Act, 1977</li> <li>-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45</li> <li>- Towns Act, 1992</li> <li>- Traditional Medicine Practice Act, 2003,</li> <li>- Vaccination Act, 1919</li> <li>- Weights and Measures Act</li> </ul>
액체성 쓰레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andoned Property(Dissposal) Act ,1974</li> <li>- Environmental Assessment Regulations 1999(LI 1652)</li> <li>- Layout Designs</li> <li>- Local Government Act(1994), Act 462</li> </ul>
수질자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eaches Obstructions Act, 1897</li> <li>-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ct, 1994(Act 490) Part I &amp; II</li> <li>- Ghana Water and Sewerage Corporation Act 1965(Act 310)</li> <li>- Rivers Act, 1903</li> <li>- Water Resources Commission Act, 1996(Act 522)</li> </ul>

## II. 환경부법(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ct(Act 490))

1994년 환경부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환경부의 설립, 환경기준의 시행과 통제, 행정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살충제의 통제와 그 등록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환경부의 설립 및 기능

환경부는 이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제1조(1)), 환경부는 영속적으로 계승되며, 환경부의 이름으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1조(2)). 또한 이러한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 (1) 환경관련 정책의 형성을 위하여 장관에게 권고하는 것. 특히, 환경의 보호를 위한 권고를 하는 것
- (2) 환경의 기술적이고 실제적인 측면과 관련한 기구들과의 협력과 그러한 기구들과 내각 사이의 소통의 통로로서 역할하는 것
- (3) 공업용 쓰레기의 발생, 취급, 저장, 수송, 처리를 통제하기 위한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
- (4) 쓰레기를 자연환경에 방출하는 것을 막고 통제하며, 환경의 질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애쓰며, 이와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와 협력하는 것

- (5)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의 기구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것
- (6) 쓰레기의 배출, 방출, 보관의 양, 형태, 성분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성 또는 잠재적 위험성을 갖는 기타 다른 오염물질의 통제를 위한 환경허용기준 및 오염배제공지의 공포
- (7) 환경에 관한 소음의 크기, 강도, 음색의 통제를 위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지시, 절차 또는 경고의 형태를 알려 주는 것
- (8) 공기, 물, 토지의 오염과 쓰레기의 방출과 독성물질의 통제를 포함하는 환경오염의 기타 다른 형태와 관련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
- (9) 기존의 계획을 따르는 것을 포함하여 발전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의 환경영향평가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것

### 2. 시행과 통제

#### (1) 환경영향평가

환경부는 서면으로 고지함으로서 특정인에게 환경부의 위원회가 갖고 있거나 가질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에서 특정한 기간 내에 환경에 대한 악영향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12조).

환경부가 이와 같은 고지를 하는 경우, 환경부는 고지가 이루어진 환경에 영향을 주는 문제와 관련하여 면허, 허가, 승인 또는 동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의 기관이나 부처 그리고 고지에 따른 이후에 환경부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없

는 경우 면허, 허가 승인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기관이나 부처를 설립할 수 있다(제12조(2)).

(2) 시행의 고지

환경부의 위원회는 어떤 행위의 수행이 공공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대하여 그러한 행위의 저지나 중단을 위하여 위원회에 의하여 요구되는 단계의 이행을 하도록 요구하는 시행의 고지를 제공할 수 있다(제13조(1)).

이러한 시행의 고지에 반하여 행동하는 자는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며, 250 penalty unit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을 내야 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과 징역이 병과될 수도 있다(제13(3)).

(3) 장관의 권한

위에서 말한 고지를 받은 자가 위원회가 승인할 수 있는 요청기간 내에 고지에 포함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은 기소와 관계없이 고지에 따르도록 타당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제14조 (1)).

3. 살충제의 통제와 등록의 관리

(1) 등록

이 법에 따라 환경부에 살충제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사람도 살충제를 수출, 수입, 생산, 살포, 광고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다(제28조(1)).

환경부는 이 법이 정한 조건에 따라 살충제를 승인하거나 다음을 만족하는 경우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 ① 의도된 사용을 위하여 그 살충제가 안전하고 효율적일 것
- ② 지역적인 조건에 따라 효율성과 안전을 위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살충제의 사용을 위한 보호수단

이 법이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다르게 살충제를 사용하거나 피용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제44조(1)).

살충제의 사용과 관련된 사람은 살충제를 사용하는 기타 다른 사람에게 살충제의 부정사용을 포함하는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제44조(2)).

살충제 관련 규제는 살충제를 그 규제에 따르도록 하거나 환경부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그 자는 권한의 위임이나 지시를 받지 않은 살충제를 사용할 수 없다(제44조(3)).

살충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보호 장비와 보호의 사용을 피용인에게 제공하지 않고 피용인에게 살충제를 사용하도록 허가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제44조(4)).

III. 환경규제규정(Environmental Assessment Regulations)

이 규정은 환경부법 제28조에 따라 환경에 대

하여 책임이 있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환경부의 권고를 위하여 1999년 2월 18일에 제정된 규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환경상의 허가

사업수행 전, 사업이 환경부에 등록되지 않았고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상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규정의 표1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또는 그 표1에 관계된 문제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제1조(1)).

책임 있는 자에 의하여 환경부에 그 수업수행과 관련된 이 규정에 충족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이 규정의 표2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어떠한 환경상의 허가도 이루어질 수 없다(제3조).

## 2. 환경영향평가

환경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초의 평가로서 수령한 신청서와 기타 관련정보에 따라 그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 ① 사업수행에 있어서의 지역, 규모 등
- ② 이용이 의도된 기술
- ③ 공공의 이익. 특히 인근주민의 이익
- ④ 토지의 사용
- ⑤ 신청서가 관련되어 있는 특정 사업의 적절성의 요소

환경부는 신청서를 평가함에 있어서 예비환경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

게 제안된 사업수행에 대한 예비적 환경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9조(1)). 신청자에게 환경적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허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8개월 동안 유효하다(제21조(1)). 그 18개월의 기간 내에 사업의 시행을 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허가가 유효하도록 할 수 있다(제21조(2)).

## 3. 환경적 승인의 요건

예비적 환경보고서와 관련되었거나 환경적 효과 보고서와 관련된 사업이 환경허가의 발령에 따라 사업시행을 승인 받은 경우, 그 사업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사업시행의 날로부터 24개월 내에 환경부로부터 환경적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2조(1)). 환경적 승인은 다음의 요건에 충족한 경우 환경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데, 환경부는 책임 있는 자가 환경부에 제출한 증거나 확인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승인도 내릴 수 없다는 예외를 결정할 수 있다. 그 증거와 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 (1) 시행의 실제 시작
- (2) 적당한 경우 허가나 승인의 취득
- (3) 환경효과보고서 또는 예비환경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완화요소를 따르는지 여부

또한 책임 있는 자는 제25조의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연간환경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5조(3)).



## IV. 환경위생정책(Environmental Sanitation Policy)

### 1. 기본원칙

환경위생은 가나국민들의 건강, 생산성과 복지에 영향을 주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개념은 건강과 주거환경의 발전에 대한 근거가 되는 핵심적 요소로서 “비전 2020”에서 정한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에서 정의되고 있다. 또한 그 프로그램은 도시와 지방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로서 주거환경의 향상된 관리와 환경적 보호 또한 정의하고 있다.

또한 1991년에서 2000년까지의 가나정부의 환경정책은 환경과 건강기준의 확립과 시행 그리고 환경위생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하여 그리고 국가적 발전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에 있어서, 국가적 발전자원의 분배에 있어서 환경위생에 더 큰 중요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위생정책은 발전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과 틀을 정의하려고 하고 있다.

### 2. 환경위생정책의 목적

환경위생정책은 주거에 있어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질적 환경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환경정책은 가나 국민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회, 경제 물질적 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환경위생

정책은 여러 가지 보충적인 행동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에는 위생의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 서비스의 제공, 공적인 교육, 단체와 개인의 행동, 규제와 입법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위생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들로 구성된다.

- ① 고체쓰레기, 액체쓰레기, 배설물, 공업쓰레기, 의료 및 기타 위험성 있는 쓰레기를 포함하는 쓰레기의 수집과 위생적인 처분
- ② 우수의 배출
- ③ 주요도로, 시장, 기타 다른 공적 공간의 청소
- ④ 전염병의 통제와 질병의 병원매개
- ⑤ 음식물의 위생상태
- ⑥ 환경위생의 교육
- ⑦ 위생규정의 감시와 시행
- ⑧ 사체의 처리

### 3. 환경적 관리와 보호

#### (1) 쓰레기의 통제와 소유

위해하지 않은 쓰레기는 가나로 수입될 수 있다. 공적인 영역에서 배출되는 모든 쓰레기는 지방의회의 재산이 된다. 또한 지방의회는 승인한 방법, 시기 그리고 장소에 쓰레기의 배출을 지시 또는 명령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적당한 장소를 확인하고 취득하며 또 구역을 분리함으로써 쓰레기의 현재와 장래의 저장, 취득, 배출을 위한 적당한 장소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 (2) 환경에 대한 책임

지방의회는 주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막고, 자연적인 자원을 보호하며 건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진다. 지방의회는 환경적 규제의 적용과 시행 그리고 공적인 교육, 환경위생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이러한 것을 달성할 수 있다. 지방의

회는 이러한 기능이 적절하게 수행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환경건강관리부의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진수**

(해외입법조사위원, 법학박사)